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방옥연 외 1명
소유물건(2024타경4792)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김태균

감정평가서번호: S240813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아침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나린

김나린



감정평가액	이십육억구천팔백팔십칠만오천원정 (₩2,698,875,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김태균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방옥연 외 1명 (2024타경479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8.20	2024.08.20	2024.08.21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028	토지	2,028	1,330,000	2,697,240,000
제시외건물	(2식)	제시외건물	2식	-	1,635,000	
	이	하	여	백		
합계						₩2,698,87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문중리	136-1	답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28	2,028	1,330,000	2,697,240,000	도시계획도로 저촉감안가격
	<제시외건물로 1,290,000원/㎡ =2,616,120,000 원	인한 ×	영향 2,028㎡	감안가격>					
	소 계							₩2,697,240,000	
(ㄱ)	<제시외건물> 동소	136-1 위지상	농막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식	1식	-	1,500,000	
(ㄴ)	동소	136-1 위지상	농막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식	1식	-	135,000	
	소 계							₩1,635,000	
	합 계							₩2,698,875,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소재 '문동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8월 20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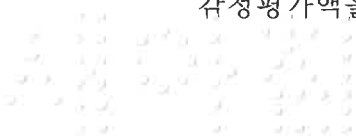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물건에 대하여 2024년 08월 20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대상물건의 존재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대상물건(토지)의 개요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호	소재지번	면적(m ²)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개별공시지가	비고
1	문중리 136-1	2,028	답	1종일주	전	중로한면	부정형 평지	570,400	-

6. 기타 검토 및 참고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 자료에 의거함.
- 본건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대체로 인정됨.
- 본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이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저촉면적은 지적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음.
- 본건 지상에 농막 2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로 인한 영향 감안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음.
- 제시외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제시외건물의 면적 등은 목측 및 외부 관찰에 의한 개략적인 면적에 의거하였음.
- 본건 지상 간이수조 등은 구조가 조잡하여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담보취급을 위한 지상권 설정으로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의 방법

가. 감정평가 방식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함.
-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임.
-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격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평가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 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2)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현재 공시된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공시기준일: 2024.01.01.)

기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m ²)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비고
A	문중리 148-2	전	381	전	1종일주	중로한면	부정형완경사	48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비교 표준지	시·군·구 (기간)	용도 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A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4.01.01.~2024.8.20)	주거	0.354% (1.00354)	2024.01.01 ~ 2024.06.30 : 0.240 2024.06.01 ~ 2024.06.30 : 0.067 $(1 + 0.00240) * (1 + 0.00067 * 51/30)$ ≈ 1.00354

※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유사한 가치형성 요인을 지니므로 지역요인은 대동함.(100/100=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 본건(1) / 표준지(A)

구분			격차율	비교
조건	항목	세항목	본건/표준지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대체로 유사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체로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1.00	대체로 유사함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0.98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행정상의 규제(도시계획도로 저촉 등)에서 열세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누계			0.9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 판례[2003다38207판결(2004.05.14.선고), 2002두5054판결(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함.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호	소재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면적(m ²)	거래시점	거래금액(토지단가)	비고
a	문중리 149-*	답	1종일주	전	622	2021.12.21	780,000,000원 (@1,254,019원/m ²)	토지만 거래
b	문중리 13*	답	1종일주	전	764	2021.12.08	850,000,000원 (@1,112,565원/m ²)	토지만 거래
c	문중리 119-*	전	1종일주	주거기타	830	2022.04.08	1,227,500,000원 (@1,478,915원/m ²)	토지만 거래
d	문중리 152-*	답	1종일주	전	150	2022.01.20	180,000,000원 (1,200,000원/m ²)	토지만 거래
e	문동리 241-*	답	1종일주	답	330	2022.09.19	200,000,000원 (1,211,784원/m ²)	토지만 거래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 세부지번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일부 *로 표기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인근지역 평가사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호	평가 목적	소재 지번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지목	면적 (㎡)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	담보	문중리 148-*	1종일주	전	전	381	2022.01.12	@1,180,000	-
㉡	담보	문중리 136-*	1종일주	답	답	881중 587.1	2023.10.31	@1,150,000	-
㉢	담보	문중리 14*	1종일주	답	답	846중 741	2022.11.07	@1,170,000	-
㉣	담보	문중리 136-*	1종일주	답	답	2,028 중 1,790	2023.03.21	@1,160,000	본건
㉤	시가 참조	문중리 44-*	1종일주	전	전	866	2022.07.11	@1,510,000	-
㉥	담보	칠암리 148-*	1종일주	전	전	935중 930	2021.11.24	@1,300,000	-
㉦	경매	문중리 179-*	1종일주	전	전	683중 113.79	2023.06.25	@1,080,000	-
㉧	경매	문중리 12*	1종일주	답	전	573	2023.02.27	@1,120,000	-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세부지번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일부 *로 표기함.

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검토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지가수준

본건과 유사한 토지의 적정 지가수준은 @1,200,000원/㎡~@1,500,000원/㎡내외 수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① 격차율 산정

■ 비교표준지(A)

구분	기호	단가 (원/㎡)	사정 보정*2)	시점 수정*3)	지역 요인*4)	개별 요인*5)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거래사례 ㉔	1,254,019	1.00	1.03293	1.00	1.050	1,360,080	2.818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A	481,000	-	1.00354	-	-	482,703	

*1)선정사유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㉔>를 선정함.							
*2)사정보정	정상거래사례로 판단됨.							
*3)시점수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거 (2021.12.21.~2024.08.20.)							1.03293
*4)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
*5)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05	1.00	1.00	1.050	
	비고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2.8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은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보정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481,000	1.00354	1.000	0.980	2.81	1,329,267	1,330,000

나)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호	면적(㎡)		시산단가 (원/㎡)	시산가액(원)	비고
	공부	사정			
1	2,028	2,028	1,330,000	2,697,24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평가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비교사례의 선정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고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다음의 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대상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 내 부동산으로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이 가능한 사례 중 가장 비교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사례를 선정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호	소재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면적(m ²)	거래시점	토지단가	비고
b	문중리 13*	답	1종일주	전	764	2021.12.08	@1,112,565원/m ²	토지만 거래

3)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거래사례	시·군·구 (기간)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b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1.12.08.~2024.08.20)	주거	3.406% (1.03406)	-

※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5)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100/100=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개별요인 비교

■ 본건(1) / 거래사례(b)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항목	세항목	본건/사례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18	본건은 사례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체로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1.00	대체로 유사함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0.98	본건은 사례대비 행정상의 규제(도시계획도로 저촉 등)에서 열세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누계			1.15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비교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기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112,565	1.00	1.03406	1.000	1.156	1,329,931	1,330,000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호	면적(㎡)		시산단가 (원/㎡)	시산가액(원)	비고
	공부	사정			
1	2,028	2,028	1,330,000	2,697,240,000	-

다. 토지가액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비고
	단가(원/㎡)	총액(원)	단가(원/㎡)	총액(원)	
1	1,330,000	2,697,240,000	1,330,000	2,697,24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3)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호	면적(㎡)		적용단가 (원/㎡)	평가금액 (원)	비고
	공부	사정			
1	2,028	2,028	1,330,000	2,697,24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적용단가 (원/㎡)	면적(㎡)		평가금액(원)	비 고
		공부	사정		
토지	1,330,000	2,028	2,028	2,697,240,000	-
		※제시외건물로 인한 영향 감안가격: @1,290,000원/㎡×2,028㎡=2,616,120,000원			
소 계				2,697,240,000	-
제시외건물	⊖	-	1식	1,500,000	관찰감가
	⊕	-	1식	135,000	관찰감가
소 계				1,635,000	-
합 계				2,698,875,000	-

2. 감정평가액에 대한 결정의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 검토 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으로 토지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끝.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소재 '문동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주상용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12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축),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람.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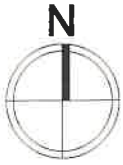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문중리 136-1번지 소재 토지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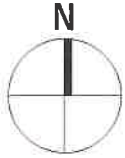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문중리 136-1번지 소재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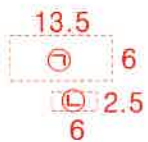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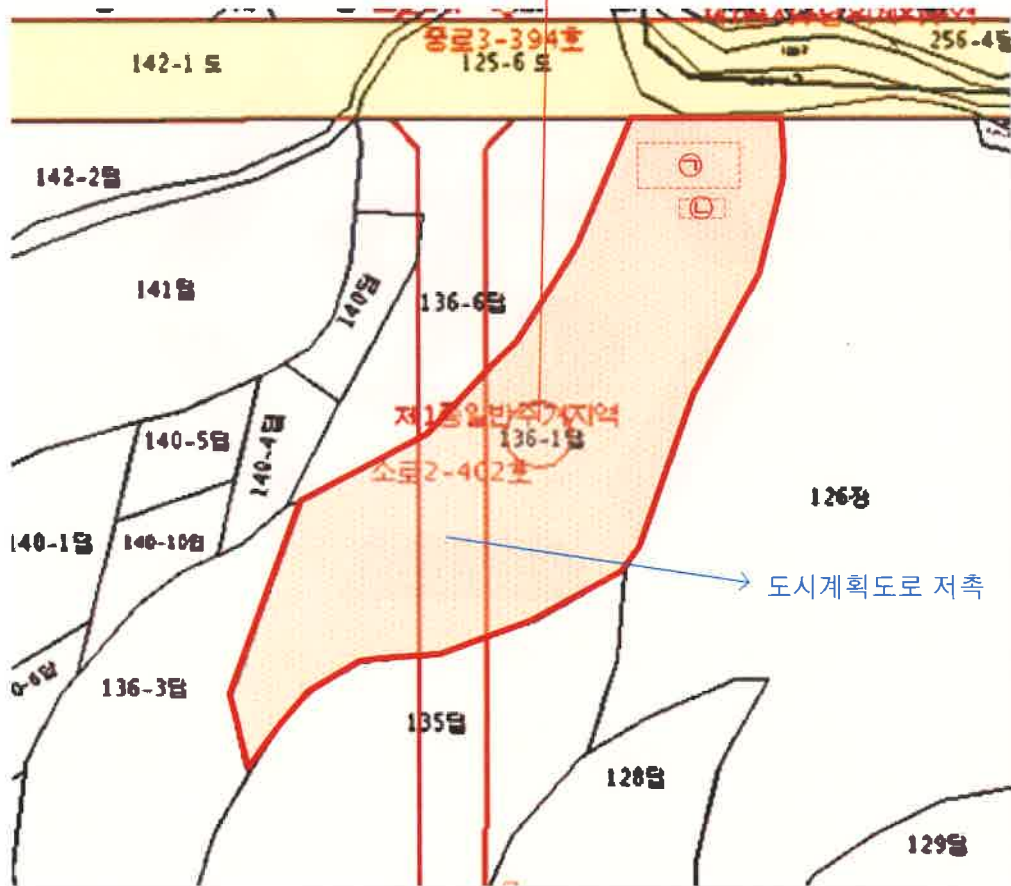


지적 및 건물 개황도



S=1/1000

기호(1) 문중리 136-1번지
(공부 : 답, 2,028㎡)



< 제시 외 건물 >

- ① 파이프조(비닐하우스) 농막 : 13.5 × 6 = 81㎡
- ② 파이프조(비닐하우스) 농막 : 6 × 2.5 = 15㎡

사 진 용 지



본건(북측촬영)



본건(북동측촬영)



본건(남서측에서 촬영)



제시외건물(ㄱ)(농막), 간이수조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ㄱ) 내부



제시외건물(ㄴ)



접면도로 및 주위환경(동측에서 촬영)



접면도로 및 주위환경(서측에서 촬영)